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서 포 항 실 버 타 운

TEL. 054-232-8995 / FAX. 054-231-8998

■계약목적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서비스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둔다.

②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장기요양등급 1~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중 본 시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(보호자)와 시설간의 전반적인 사항(이용기간, 비용 등)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이용자(보호자)사이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③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가족수발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다.

④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계약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.

⑤ 기관은 이용자(보호자)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.

■계약기간

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이용자(보호자)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.

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, 인증서 기간이 변경되어 만료 된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된다.

④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■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장기요양등급

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용계약(서약)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당사자(기관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약 및 종료, 급여비용, 비용수납, 통지할 사항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인수인계원칙, 규정의 조항 및 해석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.

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■급여비용/월이용료

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
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
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7.5%),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(0%)이다.

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
* 단, 본인부담금은 해당년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금액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본인부담금 내역		
	기초수급자	0% 부담
	차상위계층	경감(6%), 경감(9%)
	일반 수급자	15% 부담

*** (주간보호) 비급여 항목**

① 조식, 중식, 석식 매끼 2,500원
② 간식 일일 2회 제공 (오전간식, 오후간식) 각회 500원
③ 병원비, 헤어이용 요금, 개인기저귀 구매비용
④ 기타 어르신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구매되는 품목은 비급여이며 사전에 보호자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구매하고 있음.

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(2025년 1월 기준)

등급		2025년 수가
3시간미만	1등급	32,520 원
	2등급	30,100 원
	3등급	27,790 원
	4등급	26,530 원
	5등급	25,260 원
	인지지원등급	25,260 원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40,650 원
	2등급	37,630 원
	3등급	34,740 원
	4등급	33,160 원
	5등급	31,580 원
	인지지원등급	31,580 원
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4,490 원
	2등급	50,470 원
	3등급	46,590 원
	4등급	45,000 원
	5등급	43,400 원
	인지지원등급	43,400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7,770 원
	2등급	62,780 원
	3등급	57,960 원
	4등급	56,380 원
	5등급	54,780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4,660 원
	2등급	69,160 원
	3등급	63,900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4등급	62,290 원
	5등급	60,710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
13시간초과	1등급	80,060 원
	2등급	74,170 원
	3등급	68,520 원
	4등급	66,930 원
	5등급	65,350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

■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① 서비스제공자(이하 "갑"이라 칭함)의 의무

1. 서비스이용자(이하 "을"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
2."을"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3.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② 서비스이용자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3.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
③ 보호자(이하 "병"이라 칭함)의 의무
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5.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 . 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■신원인수인의 권리・의무

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■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2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'갑', '을'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3.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4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5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7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● 방문요양

① 계약의 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(보호자)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급여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분, 180분, 150분, 120분, 90분, 60분 단위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.

② 시설은 급여제공계약 시 이용자(보호자)에게 계약기간, 서비스내용 및 시간, 서비스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범위, 안전관리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화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부본 1부를 제공한다.

③ 시설은 이용자가 재가서비스(주간보호, 방문요양)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